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-40호

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28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
- 나.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·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
- 다.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
- 라.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

#### 3. 의견제출

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: 사고예방심사과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- 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- 라. 보내실 곳 :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

○ 메일 : [ksm3604@korea.kr](mailto:ksm3604@korea.kr)

○ 전화 : 043-830-4327

※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cee.go.kr>)